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5 선고 2023가단5209437 판결 [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3. 11.

판 결 선 고 2024. 3. 25.

주 문

1. 피고는 망 D(E생)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유한회사 F와 연대하여 36,408,232원 및 그 중 31,334,945원에 대하여 2023. 6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유한회사 F와 연대하여 36,408,232원 및 그 중 31,334,945원에 대하여 2023. 6. 6.부터 다

값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22. 6. 27. 유한회사 F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과 사이에서 자동차 1대(레인지어(차량번호 1 생략)에 관하여 차량가격 65,150,000원, 리스기간 36개월, 월리스료 1,407,246원, 연체이자율 24%로 정한 리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리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던 망 D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리스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리스료 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2023. 4. 25.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, 2023. 6. 5.자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중도상환원리금은 합계 72,816,464원(이 중 원금 잔액은 62,669,890원)이다.

다. 한편 망 D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23. 3. 6.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G 및 피고가 있으며, 위 상속인들은 2023. 10. 30. 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376호로 망 D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.1)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회사와 연대하여 망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중 피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36,408,232원(= 2023. 6. 5.자 기준 중도상환원리금 72,816,464원 × 1/2) 및 그 중 31,334,945원(= 원금 잔액 62,669,890원 × 1/2)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23. 6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안현진

1)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G,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, 이 사건 회사 및 G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.